

예산총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57,616,238	46,728,487
일반회계	1,347,800,385	40,434,012
특별회계	209,815,853	6,294,476
공기업특별회계	106,467,551	3,194,0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817,793	1,764,53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649,758	1,429,493
기타특별회계	103,348,302	3,100,449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25,569,598	767,0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30,750	171,923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72,973	56,18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7,553,159	1,426,595
주택사업특별회계	2,991,060	89,7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99,750	41,993
기반시설특별회계	862,267	25,868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536,926	16,108
주차장특별회계	16,831,819	504,95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155,20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9,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 목적이 정해진 외부기관 전입금 등은 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